



수강신청 운영규칙

규정번호	3-3-1		
제정일자	1989.09.01.		
개정일자	2020.03.01.		
개정번호	Ver. 11	총페이지	2

제1조(목적) 본 규칙은 학칙 제3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30조에 의한 수강신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강신청범위) ① 전문학사과정의 한 학기 수강신청 범위는 재수강 과목 및 교직과목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 22학점 이하로 한다. 다만, 졸업예정학기 수강신청자인 경우에는 12학점 이상 22학점 이하로 한다. <개정 2016.08.20.> <개정 2020.03.01.>

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한 학기 수강신청 범위는 재수강 과목을 포함하여 10학점 이상 18학점 이하로 한다.

③ 동일과목의 중복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.

제3조(수강신청정정)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는 학기 개시 후 정해진 기간에 한해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3.01.>

제4조(재수강) ① <삭제 2017.03.01.>

② <삭제 2017.03.01.>

제5조(수강신청 불인정) ① 동일한 과목을 중복신청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.

② 수업시간이 서로 중복되는 교과목 수강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.

제6조(폐강기준) 강좌별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폐강한다. 단, 학과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3.01.>

1. <삭제 2017.03.01.>

2. <삭제 2017.03.01.>

제7조(수강신청절차) 수강신청 절차는 학기마다 별도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.

제8조(인원제한 강화) 수강신청 시 인원제한과목(실험, 실습, 제도 및 타학과 수강과목)은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수강신청한다.

제9조(규칙의 개정) 본 규칙의 개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.

부 칙

- (1) (개정) 이 규칙의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개정한다.
- (2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경과조치) 이 규칙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본문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까지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의 수강신청 범위는 15학점에서 24학점 이하로 하며 졸업예정학기 수강신청자의 경우에는 12학점 이상 24학점 이하로 한다.